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문화적·예술적·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추가하고,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문화시설의 종류에 추가(안 제2조제1항제3호)
- 나.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고시로 정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3조의2제1항)
- 다.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(안 제3조의2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문화시설의 종류) ① 「문화예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항제3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문화활동시설
2. 문화 보급·전수시설
3.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

제3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문화시설의 관리위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·예술적·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. 비영리법인일 것
 2.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
갖출 것
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·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
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(승인·제청 등을 포함한다)
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
 4.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
요건을 갖춘 것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
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문화시설의 종류) ① 「문화예술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조(문화시설의 종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 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(문화시설의 관리위탁) ① <u>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</u> <u>체의 장은 문화시설의 문화적·예</u> <u>술적·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</u> <u>율적으로 관리·이용하기 위하여</u> <u>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</u> <u>의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이</u> <u>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</u> <u>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</u> <u>우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관한</u> <u>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</u> <u>정하여 고시한다.</u>

1. 비영리법인일 것
 2.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갖출 것
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·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임명(승인·제청 등을 포함한다)에 관여하는 법인일 것
 4. 그 밖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	
연 락 처	(02) 3771 - 8648